

KERI Brief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dho@keri.org)

최저임금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작년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지난 1분기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폭으로 확대되더니 2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3분위까지 확장되었다.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자가 주로 피해를 입고 소득격차마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고용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고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제외하여 2021년에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의 고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최

저임금을 인상한다면 2021년까지 총 47만 6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1.23%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져 2021년까지 누적 고용감소가 24만 6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재분배도 0.69% 악화되어 주휴시간을 제외하기 이전에 비해 0.54%p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한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EITC를 확대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임금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EITC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EITC에서 배제되는 근로자가 늘고 수혜금액이 줄어 EIT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존 수단으로 활용하고 EITC 확대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월 근로시간 174시간 적용)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순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1. 서론

□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고용대란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거세게 일고 있음

- 최저임금이 작년 16.4%에 이어 올해에도 10.9% 인상되어 2년 만에 29.1%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 대상자가 전체근로자의 18.3%에 달할 전망¹⁾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과 거기에 종사하는 단순근로자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의 일자리는 지난 8개월간 월평균 10만개가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는 월평균 21만개가 감소하였음
 - 음식숙박업 등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에 달해 창업률 2.1%를 앞지르는데 이어 올 1분기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3%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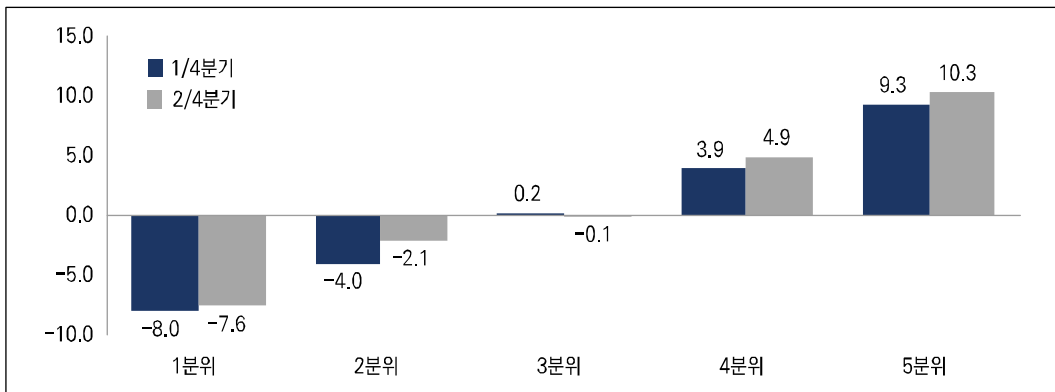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취업자수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과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음
-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고, 2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3분위까지 확대되었음
 -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가 악화되었던 과거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심화되자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1)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18.3%에 달할 전망

〈그림 1〉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대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8년

□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데 있음**

○ 최저임금이 부적절하게 설계된다면 최저임금의 혜택이 저소득계층으로 가지 않고 경제의 비효율성만 키워 최저임금으로 도와주려는 저소득층의 삶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구조, 가구구조, 재화시장의 여건,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윤희숙(2016)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빈곤정책수단으로써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 최저임금 대상자의 70%는 중상위 계층에 속한 2차, 3차 노동자에 속하고 있고 30%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임

-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을 포기했던 가구의 2, 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가계를 책임져야할 단순근로자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황인학(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게 됨

○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번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얻을 기회가 적

다는 것도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는 위험성을 높이고 있음

-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이 없이 단일 최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근로자의 재취업의 기회는 더욱 좁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최저임금 연봉보다 높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최저임금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차상위 계층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국가경쟁력 약화는 생산둔화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근로장려금을 반납하거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노동시장과 재화시장, 소득계층별 고용형태 등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소득계층별로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어느 계층에 귀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II.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논쟁

1. 최저임금의 소득재분배 영향

□ Freeman(1996)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소비자, 주주, 근로자로 전가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계층별 영향 정도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수준이 결정됨

□ (소비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여 최저임금의 일부가 소비자로 전가되는데, 전가정도는 수요탄력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업종의 재화가격이 주로 인상되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구매층 구성에 따라 소득재분배 수준이 결정됨

-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업종의 재화에 대한 수요자가 주로 고소득층이라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요 고객이라면 소득재분배는 악화됨

□ (주주) 최저임금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이 감소하면 주주의 배당이 줄어들어 최저임금의 일부가 주주에게로 전가됨

○ 주주가 독점적 기업 또는 독점적 수요자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주주의 이윤을 저임금 근로자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줄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²⁾

○ 그러나 독점적 기업과 달리 자영업이나 영세기업과 같이 완전경쟁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은 주주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도 감소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됨

-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구조가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들 사업체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과 고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하는 독점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규모 비중 비교

	규모별 사업체수 비율				규모별 종사자수 비율			
	1~9인	10~50인	50~249인	250인 이상	1~9인	10~50인	50~249인	250인 이상
한국('07)	81.1	16.2	(2.5)	(0.2)	24.2	31.0	(24.8)	(19.9)
일본('06)	69.3	24.4	(5.6)	(0.6)	14.0	27.9	(32.3)	(25.8)
영국('08)	68.6	23.8	6.2	1.4	10.4	18.4	23.1	48.2
독일('07)	60.5	29.1	8.4	2.1	6.7	15.6	24.8	52.9
프랑스('06)	83.4	12.9	3.0	0.8	12.6	19.0	22.0	46.3

주: 각국 통계청 및 정부자료, 1인 이상 제조업 기준, 한국·일본은 50~299인/300인 이상 기준
 자료: 황인학(201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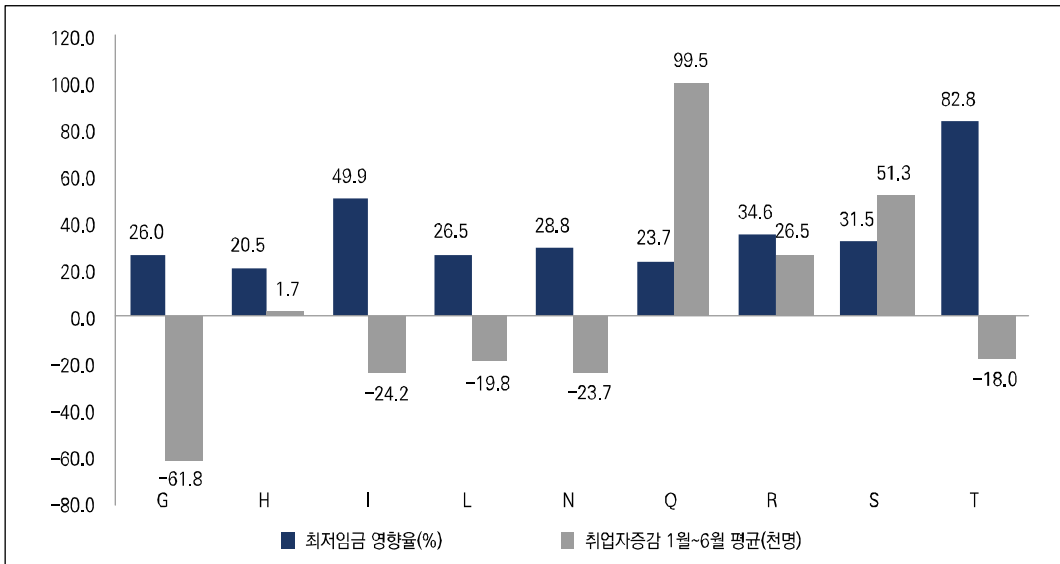
▣ (근로자)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느 계층의 고용이 증감하느냐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수준이 결정되게 됨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해고는 저임금근로자를 빈곤의 덫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은 최저임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그림 2>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강한 영향을 받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경기변동에 영향이 적은 협회 및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음

- 최저임금 영향률이 50%에 달하는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작년에 비해 월 평균 2만 4천명이 감소하였고, 영향률이 26%에 달하는 도소매업은 월평균 61만 8천명이 감소하였음³⁾
- 이와 같이 주로 영세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주로 감소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그림 2> 최저임금 영향률 20% 이상 산업의 취업자증감



주: 1) G(도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음식업), L(부동산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Q(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기타,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 소비활동)

2) 영향률은 7,530원 기준의 영향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호, 최저임금위원회(2018),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차 근로자에 의한 구축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포기 상태에 있던 중상위 소득 가구의 2차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됨

○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주부 및 학생 등 중위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밀어낸다면 소득재분배는 악화됨

- 이러한 2차 근로자의 생산성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단순근로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고용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을 통해 돕고자하는 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됨

○ 윤희숙(2016)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일 확률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윤희숙(2016)의 추정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중 21.7%만이 저소득가구에 속하고 나머지 78.3%가 가구소득 3분위 이상에 분포하고 있음⁴⁾

2.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⁵⁾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저임금 대상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에 기반한 연구들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유경준(2013)과 윤상호(2018)는 이들 연구의 방법론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있고, 주별 차이에 기반한 연구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엄격히 구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연구도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병희(2008)와 남재량 외(2009)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남성일(2008)은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윤상호(2018)는 자동화가 용이한 직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26세~39세 연령층의 고용감소가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3.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EITC)의 대체관계 유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EITC가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보완관계가 유지됨

○ 그러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할수록 반납하는 근로장려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일할 유인이 줄어들어 두 제도간의 대체효과가 커지게 됨⁶⁾

4) 윤희숙(2016)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경우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분위별 임금분포를 추정하고 있음

5) 기존연구에 대한 자세한 문헌조사는 윤상호(2018)를 참조하기 바람

6) Freeman(1996)에 따르면 영국의 FTC(Family Tax Credit)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80%~90%를 반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표 2>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EITC 수혜금액을 보여주고 있음
- 현행 EITC 하에서는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홀벌이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어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가 약화될 전망이다
- 홀벌이 가구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된다면 현재 47만원을 받다가 5만원으로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되게 됨
- 「2018년 세법개정안」대로 EITC가 확대되면 모든 가구가 수혜대상이 되지만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될 경우 단독가구는 15만원, 홀벌이 가구는 31만원, 맞벌이 가구는 45만원을 덜 받게 되어 근로유인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수록 최저임금과 EITC의 보완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높음
- 그동안 EITC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적다 보니 기초생활보장의 탈수급 유인이 약하고 최저임금과의 보완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온 만큼 EITC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두 제도 간의 보완관계가 약화되고 최저임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보존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 최저임금 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수혜금액

최저임금		7,530원	8,350원	10,000원
급여	월급 (연봉)	157만원 (1,889만원)	173만원 (2,077만원)	205만원 (2,456만원)
근로장려금 현행	단독	0	0	0
	홀벌이	47만원	5만원	0
	맞벌이 ¹⁾	0	0	0
근로장려금 개정안 ²⁾	단독	15만원	0	0
	홀벌이	181만원	150만원	88만원
	맞벌이	121만원	76만원	0

주: 1) 맞벌이 가구는 최저임금의 1.5배로 가정하였음

2)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지원금액은 각각 현행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에서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소득기준도 현행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으로 확대됨

4. 임금 인플레이션과 국가경쟁력 약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우리나라는 기본급은 적고 성과급과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상되면 차상위 연봉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으로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됨

○ Freeman(1996)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상자 비중이 높고 총생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Freeman(1996)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상자가 15%이고 총생산에서 임금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라면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인플레이션 탄력성은 0.05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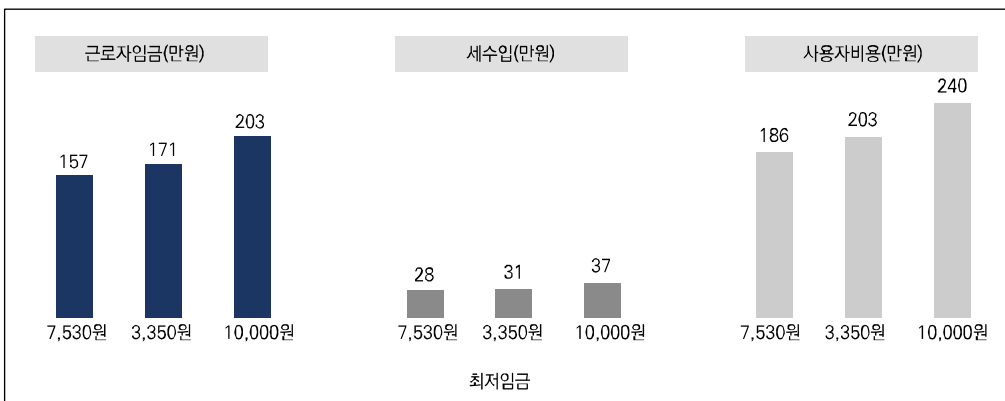
□ 임금체계와 각종 사회보험 구조도 임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 <그림 3>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없는 단순임금 체계를 가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과 사용자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주휴수당은 한국, 터키, 대만에만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 비용과 근로자 임금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

<그림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임금 비용과 근로자의 임금소득 격차



주: 1) 근로자임금은 세전월급을 의미하며, 세수는 근로자 부담(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과 사용자 부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금액

2) 사용자비용에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급여를 포함하였으며, 최저임금 8,350원부터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율(최저임금 5% 인상,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4.5% 적용)을 반영하였음

III.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 본 연구는 조경엽(2018)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조경엽(2018) 모형은 완전 동태모형으로 가계는 10분위 소득계층으로 분류되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에 속함
 - 또한 각 산업의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고 비자발적 실업이 내생화되어 있음
 - 노동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진퇴입이 단위당 고정비용과 Mark-Up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가계는 효용극대화 원리에 의해 취업과 근로시간을 결정함

2. 전제조건 및 분석 시나리오

(1) 전제조건

□ 2019년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8,350원으로 가정하였으며, 2020년은

2019년 대비 10% 인상되고, 2021년에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였음

-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도달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2020년에 9,185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0년에 10,000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고 가정하였음
- <표 3>은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근로자 급여와 사용자비용을 보여주고 있음(월 근로시간 174시간 기준)
- <표 4>는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월 근로시간 174시간 기준)을 보여주고 있음⁷⁾
 -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할 경우, 2017년 대비 2019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26.2%로 산입범위 확대 이전에 비해 2.9%p 하락하고, 2020년에는 4.2%p, 2021년에는 5.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7) 2019년부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됨

<표 3>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변화

(단위: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정 최저임금	6,470	7,530	8,350	9,185	10,000	
시급	주휴수당 포함한 기본급	7,771	9,045	10,030	11,033	12,011
	국민연금	350	407	451	496	541
	건강보험	260	303	336	370	402
	고용보험	70	81	90	99	108
	산재보험	66	77	85	94	102
	퇴직급여	648	754	836	919	1,001
	시급총액	9,165	10,667	11,828	13,011	14,166
월급	근로자 월급여	1,352,230	1,573,770	1,745,150	1,919,665	2,090,000
	기업의 임금비용	1,594,733	1,856,003	2,058,118	2,263,930	2,464,812

〈표 4〉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단위: %,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6,470	7,530	8,350	9,185	10,000
최저임금 인상률(%)	-	16.4	29.1	42.0	54.6
실질인상률 가정(%)	-	16.4	26.2	37.8	49.1
실질 최저임금(원)	-	7,530	8,162	8,914	9,647
시급 감소액(원)	-	0	188	272	353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원)	7,771	9,045	9,842	10,761	11,658

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정한 감소율(최저임금 5% 인상,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4.5% 적용)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9년에 8,162원이 되어 산입범위 확대 이전에 비해 188원이 감소하고, 2020년에는 272원, 2021년에는 353원이 감소함
- 그러나 시간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종 최저임금은 2018년에 9,045원,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0,761원, 2021년에 11,658원에 달함

□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함
 -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일하지만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음
- 현행 시행령은 월급·주급 등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함
- 대법원은 2007년, 2017년, 2018년 관련 소송에서 '유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만

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실제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0,030원이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거나 법을 어기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

- 주휴수당은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월 근로시간 174시간 적용)으로 나누어 추정되는 것이 합당하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함

(2) 시나리오

□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2가지로 구성하였음**

- 시나리오 1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를 2019년부터 적용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모두 포함한다고(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가정함
 -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0,000원이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0,761원, 2021년에 11,658원이 됨
 - 이렇게 되면 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은 26.6%, 2020년은 38.5%, 2021년은 50% 인상되게 됨

〈표 5〉 시나리오별 최저임금 변화

(단위: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정 최저임금	6,470	7,530	8,350	9,185	10,000
시나리오 1	7,771	9,045	9,842	10,761	11,658
시나리오 2	7,771	9,045	9,282	9,529	9,647

〈표 6〉 시나리오별 2017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법정 최저임금	16.4	29.1	42.0	54.6
시나리오 1	16.4	26.6	38.5	50.0
시나리오 2	16.4	19.4	22.6	24.1

- 시나리오 2는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여 2021년에는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을 기준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임
- 법정 최저임금이 8,350원일 때 주휴수당은 1,680원에 달하는데 이중 2/3만 추가로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9,282원이 되도록 함
- 2020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9,185원이지만 주휴수당 1,848원 중 1/3만 추가로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9,529원이 되며, 2020년에는 주휴수당없이 산업법위 확대만을 적용하여 실질 최저임금이 9,647원이 되도록 함
- 이와 같이 개편하면 2017년 대비 실질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에 19.4%, 2020년에 22.6%, 2021년에 24.1% 인상되게 됨

□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모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소득계층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계층별·기업규모별·근로형태별 근로자 분포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음
- 총 근로자수는 96만 5천명에 달하고 이중 17만명(17.7%)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2만명(43.5%)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11만명(11.4%)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26만 3천명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총 근로자 중 61.2%(59만 1천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38.8%(37만 4천명)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종사자가 비정규직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는 소득 4분위까지는 비정규직이 많고 5분위부터는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7〉 「근로형태별 실태조사」의 계층별·기업규모별·근로형태별 근로자 분포

(단위: 명)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W01	65,468	16,002	14,258	733	96,461
W02	27,768	44,297	21,430	3,094	96,589
W03	23,069	47,451	19,951	5,953	96,424
W04	17,351	53,562	16,586	8,939	96,438
W05	12,736	55,046	12,777	15,975	96,534
W06	9,094	53,564	8,338	25,497	96,493
W07	6,650	47,972	5,192	36,666	96,480
W08	4,160	40,541	3,994	47,800	96,495
W09	2,250	35,636	3,198	55,394	96,478
W10	2,353	26,014	4,716	63,420	96,503
합계	170,899	420,085	110,440	263,471	964,895

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현재 접근이 허용된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는 소득계층별,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을 적용하였음

- 「근로형태별 실태조사」가 2017년 기준이라 미래의 연도별 미만율은 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⁸⁾
-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최저임금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11.9%에 달하며, 9,185원이면 16.7%, 10,000원이 되면 2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일반적으로 영향률이 미만율보다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음

○ 〈표 8〉~〈표 11〉은 최저임금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시나리오별 최저임금인상률에 곱하여 연도별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8) 김경수(2018)은 임금상승률을 3.5%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모형의 경제성장률과의 조화를 위해 임금상승률을 3%로 가정하였음

〈표 8〉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미만을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W01	32.0	72.4	24.6	60.6	37.8
W02	17.0	21.7	11.0	9.2	17.6
W03	15.4	7.6	5.4	2.8	8.7
W04	5.0	3.6	3.4	2.2	3.7
W05	2.9	1.8	1.6	1.9	1.9
W06	1.1	0.7	1.3	0.5	0.7
W07	0.3	0.3	0.5	0.3	0.3
W08	0.1	0.0	0.2	0.2	0.1
W09	1.2	0.0	0.1	0.0	0.0
W10	0.0	0.0	0.0	0.0	0.0
합계	17.9	6.7	7.1	0.6	7.1

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표 9〉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미만을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W01	47.2	79.6	31.6	72.0	50.5
W02	34.8	46.1	29.0	32.1	38.6
W03	22.7	14.6	10.8	7.3	15.3
W04	10.2	7.3	7.6	4.6	7.6
W05	7.0	3.8	3.3	3.7	4.1
W06	2.9	1.7	2.4	1.6	1.9
W07	0.7	0.6	0.7	0.6	0.6
W08	0.1	0.1	0.3	0.2	0.2
W09	0.0	0.0	1.3	0.0	0.0
W10	0.1	0.0	0.0	0.0	0.0
합계	28.6	11.3	13.4	1.4	11.9

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표 10〉 최저임금 9,185원에 대한 미만을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W01	58.1	85.5	36.5	83.2	59.7
W02	53.2	66.9	49.5	54.1	58.7
W03	30.3	25.5	18.8	15.4	24.6
W04	15.0	12.0	12.3	11.0	12.5
W05	10.0	6.3	6.1	7.3	7.0
W06	5.4	2.8	4.2	3.2	3.3
W07	1.4	1.1	1.7	1.1	1.1
W08	0.1	0.2	0.3	0.4	0.3
W09	0.0	0.0	0.0	0.1	0.1
W10	0.2	0.0	0.0	0.0	0.0
합계	37.6	16.1	20.7	2.6	16.7

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표 11〉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미만을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W01	63.3	89.1	39.7	85.4	64.3
W02	69.2	84.7	68.4	73.7	76.3
W03	37.8	36.8	28.0	23.2	34.4
W04	19.5	17.1	17.8	17.5	17.7
W05	12.8	9.1	9.3	11.9	10.1
W06	7.0	4.2	6.1	6.1	5.1
W07	1.8	1.7	1.8	1.9	1.8
W08	0.3	0.3	0.7	0.5	0.5
W09	0.0	0.0	0.2	0.1	0.1
W10	0.3	0.0	0.0	0.1	0.1
합계	44.0	20.6	27.8	3.9	21.0

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3. 분석결과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그림 4>와 <그림 5>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총고용변화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률이 커지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아지면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시나리오 1의 고용감소는 2018년에 6만 8천명, 2019년에 9만 8천명, 2020년에 15만 6천명, 2021년에 15만 3천명 감소하여 4년간 총 47만 6천명이 감소할 전망⁹⁾

○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시나리오 2에서 고용감소 효과는 크게 줄어들 전망

- 시나리오 2의 고용감소는 2019년에 5만 5천명, 2020년에 7만 4천명, 2021년에 4만 9천명에 달해 4년간 총고용 감소는 24만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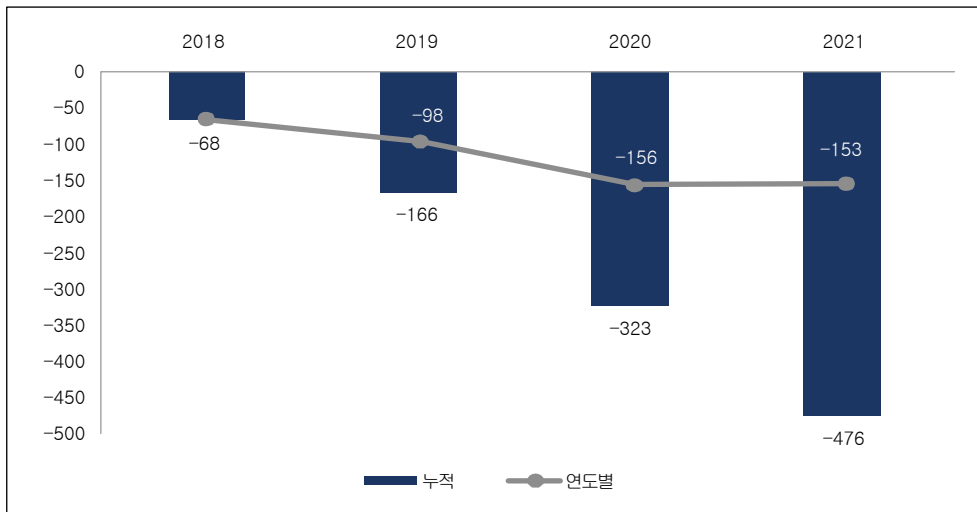
- 시나리오 1과 비교하면, 2018년은 동일하고, 2019년은 시나리오 1에 비해 고용감소가 1만 3천명 줄어들고, 2020년은 8만 2천명, 2021년은 10만 4천명 줄어들 전망임

-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감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년간 총 23만 명이나 줄어들 전망임

9) 최경수(2018)는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 2019년에 8,682원, 2020년에 10,010원일 경우 고용은 2018년에 8만 4천명, 2019년에 9만 6천명, 2020년에 14만 4천명 감소하여 3년간 32만 4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경수(2018)은 임금중간값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임금에 대한 고용탄력성 -0.035 (항가리 케이스)를 곱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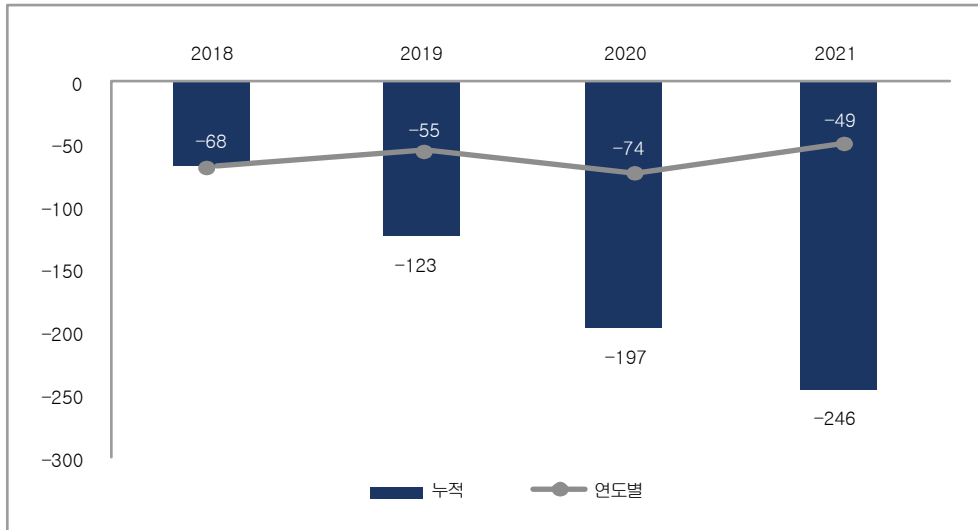
<그림 4> 시나리오 1의 연도별 고용과 누적 고용 변화

(단위: 천명)



〈그림 5〉 시나리오 2의 연도별 고용과 누적 고용 변화

(단위: 천명)



□〈표 12〉와 〈표 13〉은 최저임금이 기업규모별·근로형태별 고용효과를 연도별과 누적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음

○〈표 8〉~〈표 11〉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비중이 기업규모별·근로형태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이에 상응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적용대상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다른 근로자와의 대체효과 그리고 자본과의 대체효과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비중이라 할 수 있음

○ 2021년 이전까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 감소가 가장 크고, 다음은 대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순으로 고용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21년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대기업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대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감소폭이 2020년에 비해 줄고 대기업의 고용감소폭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비중을 줄이는 시나리오 2의 경우에도 고용감소 패턴은 시나리오 1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고용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표 12〉 시나리오별 연도별 고용변화

(단위: 천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대기업	비정규직	-3.9	-10.7	-20.3	-44.8	-6.5	-10.1	-19.0
	정규직	0.6	0.4	0.3	-17.1	0.2	0.2	-8.3
	소계	-3.3	-10.3	-20.0	-61.8	-6.3	-9.9	-27.3
중소기업	비정규직	-7.2	-13.4	-22.5	-6.3	-7.9	-11.0	0.9
	정규직	-57.6	-74.8	-113.6	-85.0	-40.6	-53.2	-22.4
	소계	-64.7	-88.2	-136.1	-91.3	-48.5	-64.2	-21.5
전체	비정규직	-11.1	-24.1	-42.8	-51.1	-14.5	-21.1	-18.1
	정규직	-57.0	-74.4	-113.3	-102.0	-40.4	-53.0	-30.7
	합계	-68.0	-98.4	-156.1	-153.1	-54.8	-74.1	-48.9

〈표 13〉 시나리오별 누적고용변화

(단위: 천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대기업	비정규직	-3.9	-14.6	-34.9	-79.6	-11.1	-21.2	-40.3
	정규직	0.6	1.0	1.3	-15.8	0.5	0.7	-7.6
	소계	-3.3	-13.6	-33.6	-95.4	-10.7	-20.6	-47.9
중소기업	비정규직	-7.2	-20.6	-43.1	-49.4	-14.8	-25.7	-24.8
	정규직	-57.6	-132.3	-246.0	-330.9	-97.5	-150.8	-173.2
	소계	-64.7	-152.9	-289.0	-380.3	-112.3	-176.5	-198.0
전체	비정규직	-11.1	-35.1	-78.0	-129.1	-25.9	-47.0	-65.1
	정규직	-57.0	-131.3	-244.7	-346.7	-97.1	-150.1	-180.9
	합계	-68.0	-166.5	-322.6	-475.8	-123.0	-197.1	-246.0

(2)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 〈그림 6〉 ~ 〈그림 9〉는 시나리오 1의 연도별 소득 계층별 근로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그림 5〉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계층별 근로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현실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것듯이 최근 근로소득은 6분위까지 감소하고 7분위부터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6분위까지 소득이 감소하고 7분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이 7,530원인 경우 중하위계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중상위계층의 소득은 증가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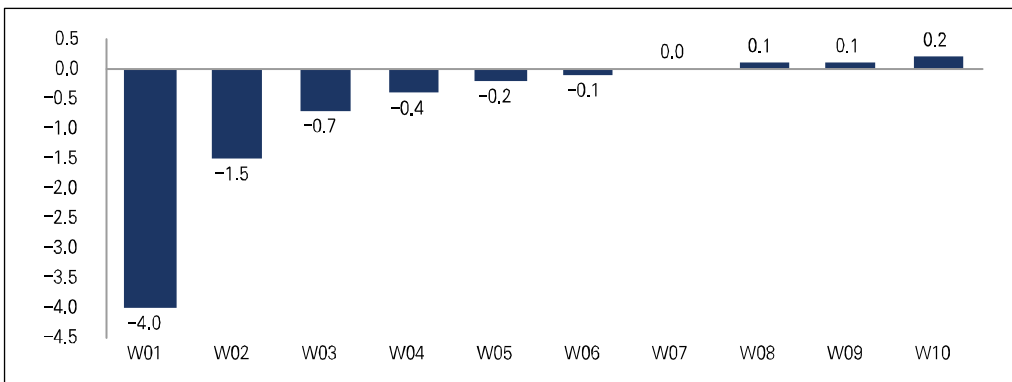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고 적용대상자가 늘어날 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늘어나 2019년에는 8분위까지, 2020년에는 9분위까지 감소하다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는 2021년에는 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할 전망

- 최저임금정책 수정없이 현행대로 인상한다면 생산이 감소하여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 <그림 9>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인상되고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14.7%와 16% 감소하고 9분위와 10분위는 0.3%와 0.1% 감소에 그쳐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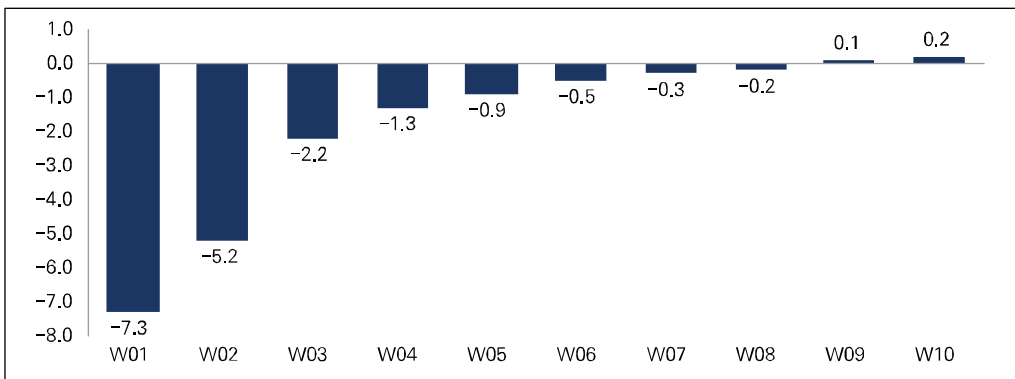
<그림 6> 시나리오 1의 2018년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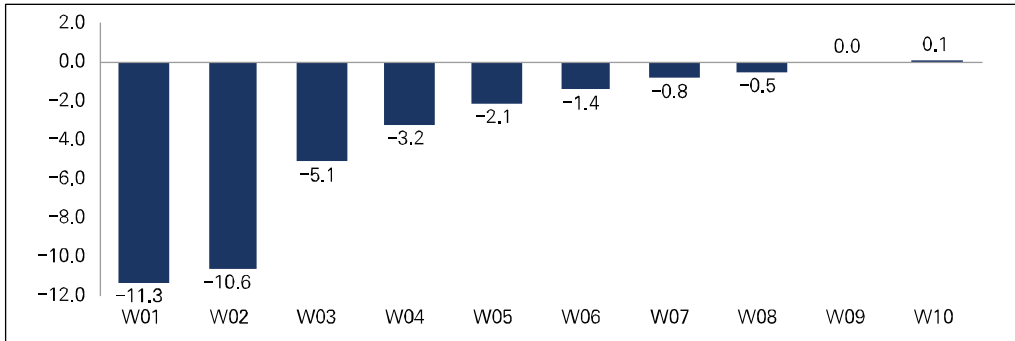
<그림 7> 시나리오 1의 2019년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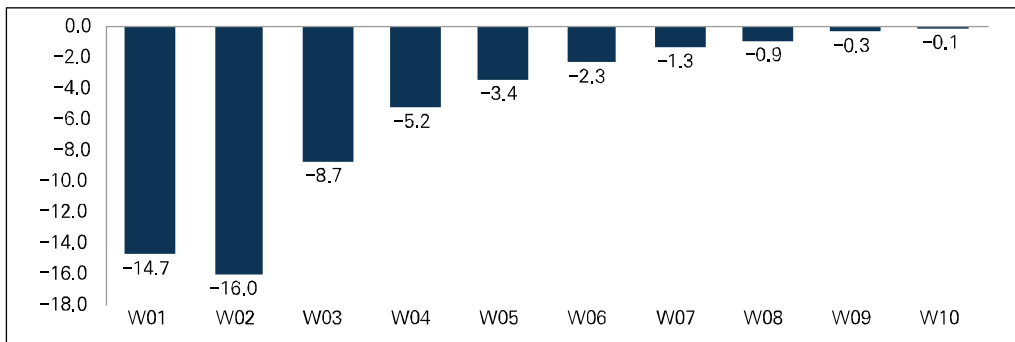
〈그림 8〉 시나리오 1의 2020년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



〈그림 9〉 시나리오 1의 2021년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



□〈표 14〉는 2018년~2021년까지의 연평균 소득계층별·기업규모별 근로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소득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시나리오 1에서 11.2% 감소하고 시나리오 2에서 7.7% 감소하여 시나리오 2의 소득감소폭이 3.5%p 줄어들 전망
- 대기업에 종사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시나리오 1에서 5.5%감소하고 시나리오 2에서 3.4% 감소하여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2.1%p 소득감소폭이 줄어들 전망

□〈표 15〉는 2018년~2021년까지의 연평균 소득계층별·근로형태별 근로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정규직이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이 저임금 근로자 적용 대상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 1에서 소득 1분위 계층의 정규직 소득은 12.3%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6.5% 감소할 전망이다
- 시나리오 2의 경우 소득 1분위 정규직의 소득은 8.2%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휴시간을 제외할수록 근로소득 감소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표 14〉 소득계층별·기업규모별 근로소득 변화(2018~2021년 평균)

(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W01	-5.5	-11.2	-3.4	-7.7
W02	-6.8	-9.0	-4.1	-5.9
W03	-2.9	-4.6	-1.6	-3.1
W04	-1.9	-2.7	-1.0	-1.9
W05	-1.0	-1.8	-0.5	-1.4
W06	-0.6	-1.3	-0.3	-1.0
W07	-0.2	-0.9	0.0	-0.8
W08	0.0	-0.7	0.1	-0.7
W09	0.1	-0.3	0.1	-0.4
W10	0.3	-0.4	0.2	-0.6

〈표 15〉 소득계층별·근로형태별 근로소득 변화(2018~2021년 평균)

(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W01	-12.3	-6.5	-9.4	-8.2	-4.1	-6.4
W02	-9.7	-7.5	-8.5	-6.1	-4.6	-5.5
W03	-4.9	-4.2	-4.3	-2.9	-2.5	-2.8
W04	-3.0	-3.1	-2.6	-1.7	-1.8	-1.8
W05	-2.1	-2.1	-1.7	-1.2	-1.2	-1.2
W06	-1.4	-1.5	-1.1	-0.8	-0.9	-0.8
W07	-0.9	-0.9	-0.6	-0.5	-0.5	-0.5
W08	-0.5	-0.7	-0.4	-0.3	-0.4	-0.3
W09	0.0	-0.2	0.0	0.0	-0.1	-0.1
W10	0.1	0.0	0.1	0.0	0.0	0.0

〈표 16〉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2018~2021년 평균)

	지니계수			5분위 배율 (%)			GDP (%)	부가가치 (%)
	BaU	시나리오	변화율 (%)	BaU	시나리오	변화율		
시나리오 1	0.36217	0.36664	1.23	5.67800	5.82025	2.51	-3.55	-1.58
시나리오 2	0.36217	0.36467	0.69	5.67800	5.75650	1.38	-1.79	-0.95

(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비율을 줄일수록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시나리오 1에서 지니계수로 추정된 소득재분배는 1.23% 악화되고, 5분위 배율로 추정된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전망이다
- 주휴시간이 단계적으로 제외되는 시나리오 2에서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시나리오 1에 비해 시나리오 2에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각각 0.54%p와 1.13%p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IV.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음

○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인상하면 2021년까지 총 47만 6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1.23%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의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추정된 소득분포도 6분위까지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도 감소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제외하여 2021년에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21년까지 누적 고용감소가 24만 6천명으로 줄어들고 소득재분배도 0.69% 악화되는 수준에서 그칠것으로 추정됨

▣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자의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가 저임금 근로자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 및 임금구조, 가구구조의 변화, 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소득재분배는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음

○ 본 연구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됨

▣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소정근로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시간에서 제외해야 함

○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산업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비용과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격차를 줄여 임금괴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음

▣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최저임금으로 직장을 잃은 단순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이나 지역으로 옮겨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은 단순근로자가 다른 곳에서도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위험성이 높아짐

○ 이들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가 줄어들어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짐

▣ 최저임금은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EITC를 확대하여 두 제도간의 상호보완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도달하면 최저임금 영향율이 약 35%에 달하게 되는데,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대상자라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어긋나고 이에 따른 고용감소와 소득재분배 악화라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할 필요성이 높음
- 최저임금이 현재와 같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EITC가 확대되어도 수혜대상자와 수혜금액이 줄어들어 근로복지의 취지가 약화될 전망
-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하고 EITC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EITC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3), 2008.
- 남재량·안태현·안종범·전영준, “근로빈곤 대책연구 1”, 연 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2009.
-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Focus 제32호, KDI, 2013.
- 윤상호,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2018.
- 윤희숙,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 계”, KDI Focus 제71호, KDI, 2016.
- 이병희,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 산업노동 연구 14(1), 2008.
- 조경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 원, 2018.
-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 제90호, KDI, 2018.
- Freeman R., “The Minimum Wage as a Redistributive Tool”, The Economic Journal, 106, 1996.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K타워 46층